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2

제출년월일 : 2007. 9.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와 “청소년실무 위원회” 를 “청소년육성위원회” 로 통합·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안산시차세대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안산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로 변경함.
- 나.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안산시차세대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서발췌서 : 별첨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

□ 예산수반사항 : 16,300천원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 6,300천원
 - 산출기초 : 70,000원×15명×6회 = 6,300천원
- 차세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 10,000천원
 - 산출기초 : 50,000원×50명×4회 = 10,000천원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7. 9. 4 - 2007. 9. 19(15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 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 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 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2장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제11조(설치)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안산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임기)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산시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차세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안산시차세대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체육청소년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체육청소년과장 손 경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담당 이준승
	담당자 성명·전화	윤영빈 (행정 2217)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12
----------	------

제안년월일 : 2007. 10. 12.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차세대위원회 위원 위촉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차세대위원회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공개 모집에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13조(구성) ① (생략)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학교장,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p>	<p>제13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학교장,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원안과 같음)</p>